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 30420－1876 (전화 : 923－8579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 · 준영구. 10. 5. 3. 1.	구 청 장	서울특별시장
수신처 보존기간		전결	
시행일자	86. . .		
보조기관	부청장	협조기관	문서통제
	도시정비국장	86.10.24.	검열 1986.10.2 통제관
	도시정비과장		
기안책임자	남궁태	(대호)	발송인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명의	
제목	지정제 건축선 폐지에 관한 고시		

원본대조필

(제 1 안)

수신 : 내부결재

제목 : 같은건

1. 건지 30421－249 (86. 3. 18.)호, 건지 30420－782 (86. 8. 11)호 및 건축 30420－422 (86. 9. 3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에 의거 동대문구 용두동 234－5번지상에 있는 지정제 건축선에 대하여 건축법 제30조 제2항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용두동 234－5번지상에 있는 지정제 건축선이 폐지승인 되었기 건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코저 합니다.

아 래

가. 지정제 건축선 폐지 조서

제 목	위 치	폭	길 이	기 타
지정제 건축선	동대문구 용두동 234-5	3m	12 m	폐지

나. 승인도면 법첨

나도붙임 : 1. 관계도면 1부.

2. 고시안 1부. 끝.

(제 2 안)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지정제 건축선 폐지

1. 건축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규정에 의거 지정제 건축선이 폐지승인되었기 건축법제30조 제3항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6 . .

가. 지정제 건축선 폐지 조서

제 목	위 치	폭	길이	비 고
지정제건축선	동대문구 용두동234-5	3m	12m	폐지

나. 승인도면 별첨 (생략). 끝.

(제 3 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같은건 보고

1. 건축법 제 30조 제 2항 및 동법 제 45조 제 1항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용두동 234-5번지 지상의 지정제 건축선이 승인되어 건축법 제 30조 제 3항규정에 의거 고시하였기 보고 합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문 2부. 끝.

수신처 : 건설부장관 (건축과) 발신 : 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장(건축지도과) 동대문구청장

(제 4 안)

수신 : 총무처 장관 (법무담당관) 발신 : 서울특별시장

제목 : 관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안

나. 지정제 건축선 폐지

다. 법적근거 : 건축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45조 제3항

동법 제30조 제3항. 〃

따로붙임 : 고시안 1부. 끝.

(제5안)

수신 : 서울특별시장 발신 : 구청장

참조 : 시민과장

제목 : 고시번호 부여와 관인날인 및 발송의뢰

1. 우리구 용두동 234-5번지 지상외 지정제 건축선어 건축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승인되어 건축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고시 하고 보고코저.

2. 고시번호 부여와 관인날인 및 발송을 의뢰하오니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지정제 건축선 폐지승인 보고 1부

관보 게재의뢰 1 부. 끝.

(제6안)

수신 : 받는곳 참조 발신 : 구청장

수신 : 갑은건 통보

1. 우리구 관내 용두동 234-5번지 장외 지정제 건축선이 폐지승인

원본대조필

되었기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.

따로붙임 : 고시안 1 부. 끝.

수신처 : 용우 2동, 건축과장.

(제7안)

수신 동대문구 용두동 234-5 이 무연 발신 : 구청장

제목 : 갑은건 통보

1. 귀하께서 우리구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

2.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서류에 대하여 용두동 234-5번지내에 있는 지정제 건축선에 대하여 일부만 폐지 승인고시 되었기 통보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앞으로도 계속 구정발전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원본대조필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지정제 건축선 폐지

1. 건축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제 건축선이 폐지 승인되었기 건축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6. 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지정제 건축선 폐지 조서

시설명	위 치	폭	길 이	비 고
지정제 건축선	동대문구 용두동 234-5	3m	12m	폐 지

나. 승인 도면 별첨 (생략)

원본대조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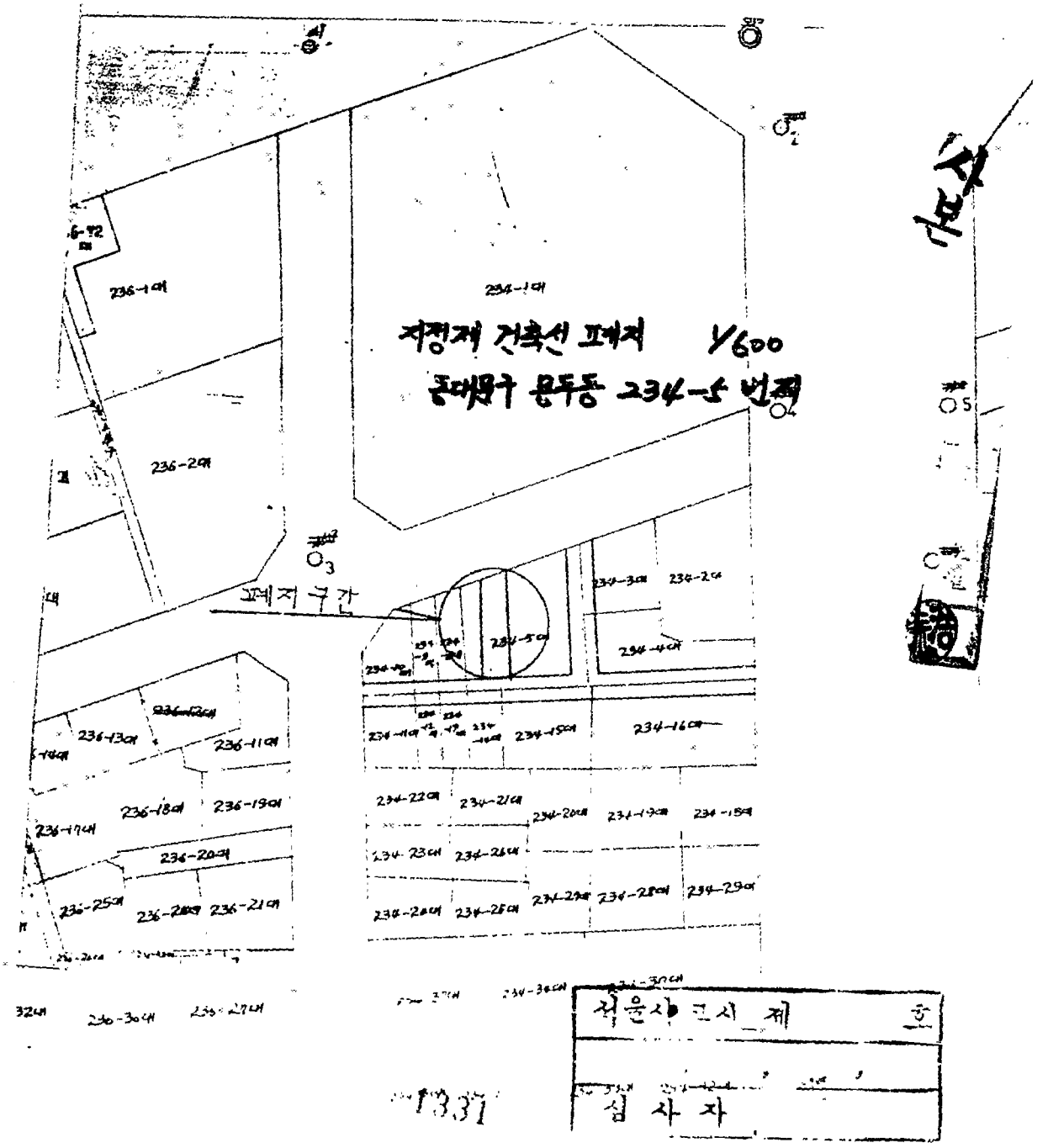
시 동대문구 송두동 지적도 38